

의안 번호	1150
----------	------

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5. 6. 30.(화)
- 나. 제 출 자 : 이복희 의원 외 8명
- 다. 위원회회부 : 2015. 7. 1.(수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5. 7. 17.(금)

2. 제정이유

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,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실현 및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민의 권리와 의무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1조)
- 마. 양성평등 참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7조)
- 바.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8조 ~ 제28조)
- 사.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29조 ~ 제38조)
- 아.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9조 ~ 제46조)

4. 근거법규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기본적인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

- 조례안 제6조,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조례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양성평등정책 촉진에 관한 사항
- 조례안 제18조에서 제28조까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사항
- 조례안 제39조에서 제46조까지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